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7. 5. 22.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4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7.5.18)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홍 성배)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 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2006.9.1 및 2006.12.30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안 제16조)
-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 정비 (안 제21조의 2 제3호 나목)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3. 専門委員の 検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김완섭)

-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 한다.”로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2005년 6월 20일 전 “영등포구세 조례”와 같은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고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 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 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 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함.
- 다만,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안 “제21조의 2”는 “제21조의2”로 붙여 쓰고, 안 제21조의2제3호나목 중 “가목이외의 주택”은 “가목 이외의 주택”으로 띄어쓰기 하고, “6만원 + 4,000만원”은 “6만원+4,000만원”으로 붙여 쓰기하고, “24만원 + 1억원”은 “24만원+1억원”으로 붙여 쓰기하고,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으므로 “부 칙”은 “부칙”으로 붙여 쓰기 수정의견임.

4. 審査結果：原案 可決

※ (자구정정내용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구정정 내역

구분	자구정정 전	자구정정 후
제4조의 2	<u>가목이외의 주택</u> <u>6만원 + 4,000만원</u> <u>24만원 + 1억원</u>	<u>가목 이외의 주택</u> <u>6만원+ 4,000만원</u> <u>24만원+ 1억원</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
----------	----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06. 9. 1. 및 '06.12.30.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 (안 제16조)
-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 정비 (안 제21조의2제3호나목)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
 - 서울특별시 세제과 - 2664(2007. 3. 2) 구세 조례 개정표준안 시달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07.3.8 ~ 2007.3.28)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제21조의 2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조와 조 제목은 각각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각각 띄어 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 (납기) (생략)	제16조(납기)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단서 신설>	2. ----- ----- -----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 증서를 교부받은 때
제21조의 2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의 2(세율) ----- 각 호의 어느 하나로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이외의 주택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2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4만8천원 + 4,000만원	4,000만원 초과 6만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4	1억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19만2천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